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6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20. 6. 29. 접수 제24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1.경 D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D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2020. 6. 25.경부터 그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전2951호로 위 카드사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0. 8. 24. 'D는 원고에게 4,043,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2. 24.경 확정되었다.

다. 한편, D는 2015. 4. 2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25,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는 2020. 6. 29. D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20. 6. 29. 접수 제24960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20. 6.경 D는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 합계 17,348,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인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으로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피고의 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피고가 D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가사 이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20. 6. 29. 접수 제24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북 군산시   연립주택(도로명주소)전북 군산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 적 2층 호 38.88제곱미터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동 소  대 917 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917 분의 50.53

